

충북혁신도시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

특별공급 당첨자(노부모부양 특별공급)적격여부 서류제출 안내문

■ 서류검토 운영 일시 및 장소

구 분	내 용
기 간	2021.01.04(월) ~ 01.10(일), 7일간 10:00 ~ 17:00
장 소	충북혁신도시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 견본주택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05)
유의사항	※ 적격여부 서류제출 전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예약을 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.12.11)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. ※ 사전서류검토 완료 후 반드시 계약기간 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검토시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특별 공급 공통 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아파트 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 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표시, 기록대조일은 2020.09.01 ~ 2020.12.11까지로 설정 → 추첨제 당첨자는 본인만 발급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
	○		서약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계약자 확인사항 등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	○	복부확인서	본인	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→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(기록대조일 2020.09.01 ~ 2020.12.11)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	자녀	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(기록대조일 2020.09.01 ~ 2020.12.11) -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
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-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)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위임장	본인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(당사 견본주택에 위임장 비치)
	○		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주택관련 부적격 서류	○	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- "소형·저가주택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